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없음 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원안가진

7.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

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4월 25일 김포시장
 나. 회부일자 : 2002년 5월 2일
 다. 상정일자 : 2002년 5월 2일
 라. 의결일자 : 2002년 5월 4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정부의 제2단계 읍·면·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01. 7. 6. 우리시 조례를 재정하고 2002. 3. 20. 김포3동 개소와 함께 3개 동지역에 대한 문화센터가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음.
- 한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당초 조례준칙에 대하여 각 시민단체 및 학계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일선 읍·면·동 및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상당부분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, 이렇게 제기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보완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조례개정 표준(안)을 시달하였고, 이를 각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,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죄자 함.

나. 주요골자

【문화센터 운영관련】

-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“문화센터”로 함.
- 운영대상을 면까지 확대
-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자치 기능 우선적 수행(안 제5조)
- 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담,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
(안 제7조)
- 사용료·수강료 등의 요율결정, 감면, 정수주체, 관리·집행요령 등(안 제10조)

-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(안 제11조)

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】

-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의견·집행기능 부여,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회대 등
(안 제15조, 제16조)

- 고문제도, 위원 위촉절차, 위원장 자격 요건,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(안 제17조)
- 위원의 문화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(안 제18조)
- 위원 해촉절차 강화 및 해촉 시 위원회 심의(안 제20조)
-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(2002. 12. 31.까지), 면 지역의 시행 유보(부칙)

3. 전문위원 지도보고요지(전문위원 이정찬)

- 본안건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1, 2단계 읍·면·동기능전환보완지침 및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키 위한 보완책으로는 적정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읍·면·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은 행정적 계층과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 기능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므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와 이에 대한 회계관리, 그리고 문화센터 사무운영에 따른 봉사활동비, 위탁 시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부담과 행정적 관리측면이 적절히 부합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문화센터로 함에 대하여는 제33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심의 시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고, 준칙안의 모든 조문대로 필수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준칙안은 자치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하였고,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와 같이 문화의집 확충계획이 있음을 고려하여 센터와 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함에 따른 혼선은 없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<p>신광식 위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칭을 문화센터로 하여 무슨 이익이? ○ 혼선만 발생, 주민자치센터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 	<p>자치행정국장 강경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칭공모를 통해 문화센터로 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. 고려해 나가겠음. <p>자치지원과장 박현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초 자율적인 명칭으로 혼선이 많았음. 변경된 행자부 준칙대로 하면 문화센터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함.

질의요지	답변요지
김병우 위원) ○ 동·면의 인원은 감소되고 업무수요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? 프로그램에 따라 사설강습소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?	자치행정국장 강경구) ○ 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평가보교회 등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. 업무의 효율을 위해 사용료는 동·면장이, 수강료는 자치위에서 관장토록 함.
한규태 위원) ○ 자원봉사자 수당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불합리, 지금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인데 봉사? 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하는데 자치? ○ 행·재정적 손실위험이 있으므로 시행착오가 많은 정부의 정책을 미리 앞서 간 필요는 없음.	자치지원과장 박현진) ○ 동 기능전환이 우선되어야 함. 주민자치에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가 안 되고 있음. 회계관리를 이원화하여 강사수당만큼은 자치위에 재량권을 줌.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. ○ 앞서 간 것은 없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없음 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원안가인

7.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

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4월 25일 김포시장
 나. 회부일자 : 2002년 5월 2일
 다. 상정일자 : 2002년 5월 2일
 라. 의결일자 : 2002년 5월 4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미래사회의 주역이 된 지역 청소년에게 개방형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문화, 예술, 정보, 취미활동, 동아리 모임으로 인한 열린 청소년 문화의 장을 보호·육성시켜 나가는데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정함.(안 제3조)